

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

(앞쪽)

변경승인 제 - 호		
승인 받는 자	성명 또는 법인명	
	주 소	
대상 국가유산	명 칭	
	종 류	수량
	소재지	
승인사항	당초승인내용 (당초 승인번호 제 - 호)	
	변경승인내용	
	승인조건	

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유산청장
(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)

직인

행정사항

1. 이 승인은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제1호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.
2. 승인을 받고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.
3. 국가유산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.
4.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,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.
5.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,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·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.